

예 주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사 회 (전화번호 226) 전결규정 조 호
 문서번호 1423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 안 자 결 재 자
 시행일자 사 회 과 시 상
 보존년한 기 안 일 자 결 재 일 자
 68.9.15

보 조 기 구 조
 제2부서장
 보건사회국장
 사회국장
 구로계장



Handwritten signature and notes:
 1820
 1820

예주제 184 호

경 수 참 조 유 신 조 각 안 참 조
 법무담당
 법무관장
 송 서



과대장청리 1202

제 목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운영 요강중 개정 2

(제1안) 내부결재 32

1.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구성에
 의거 동식당운영에 필요한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2. 이에 따라 현재 동요강 제4의 가항에 의거 주식용
 소맥분을 본청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입한
 양곡을 일단 시종암창고에 입고시킨후 매월 배정 각식당에서
 운반하게되므로 그 기리관계 또는 운반비용 시간낭비와 건면

가공에 이르기까지 이중은반하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양곡
구입사용에 편리하게하기 위하여 양곡구입비율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영달할수 있는조치로 시립후생식당 요강제4의

"가"항중"주식용양곡(소맥분 및 건면)은 시에서 일괄구입배
정하고"를 주식용 양곡으로 개정코자 제걸을 바랍니다.
3. 68.4.4분기본 후생식당용 양곡구입안을폐안코지합니다.
(제2안) 2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 건

32 2

1. 예규제 166(67. 12. 29)호에 관련된것임.

2.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후생식당운영 요강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동요강 제4의"가"항에 따라 주식용 양곡을 분청에서 일괄

구입배정하든것을 앞으로는 구청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구매
할수 있도록 동요강 제4의"가"항중"주식용양곡(소맥분및건면)
은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를 "주식용양곡비율 무시하
고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영달 정리케한다.
금양비율 영달조치하되 양곡구매 및 식당운영에 차질없도록
철저토록 기할것.

~~가. 68. 11월본안으로 영달조치한다. 끝~~

수신처 서칭 4-9 서사 30. 31.